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
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용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식품명 및 광고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, 특히 어린이들이 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저연령층의 마약 범죄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.
-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마약류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, 충청북도 내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·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나.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)

다. 계획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
라.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마.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‘마약’이라는 용어가 일상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현상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-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등 미성숙 계층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음.
- 따라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제도화하고 도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 본 조례안은 마약 관련 범죄예방 및 도민의 의식 함양 차원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.

나.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, 사회 전반에서의 언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규범적 조례임.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상위법과의 내용적 충돌이나 중복 우려 없음.
- 공공기관의 책무 부여 및 도민 홍보활동 등은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율 가능한 사안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 제정권한)에 부합하며 법적 타당성이 확보됨.
-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.
-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및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 포장 교체 등에 비용 지원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.
-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'25. 4. 15.~'25. 4. 2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다.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각 조항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용어 정의 및 집행체계(도지사의 책무, 협조 요청 등)가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.
- 제4조 및 제6조에서 제시된 실태조사·홍보·인센티브 조항은 실제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기능 가능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마약류 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일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,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 및 도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려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.